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1 - 188 호

공시송달(공고)

건축법 위반사항으로 관리중인 다음과 같은 건축물에 대하여 '건축법 위반사항에 대한 처분사전통지' 공문을 소유자의 주민등록 등본상 주소지로 등기발송하였으나, '폐문부재' 의 사유 송달되지 않아 공시송달(공고)합니다.

2021년 2월 일

광진구청장 광진구청장인

1. 제 목: 건축법 위반사항에 대한 처분사전통지(의견제출통지서, 222-○○)
2. 대 상

건축물 위치	소유자	위 반 내 용	반송사유
광진구 광나루로40길 ○○ (구의동 222-○○)	오○근	지상3층 근린생활시설(사무소)를 주거용으로 사용 [무단용도변경, 위반면적 119.14㎡] 지상4층 주택을 2가구로 무단으로 가구수 증가 [무단 대수선, 위반면적 604.11㎡]	기타 (폐문부재)

3. 공고기간: 2021. 2. 10.(수) ~ 2021. 2. 24.(목) (14일 이상)
4. 방 법: 구 홈페이지
5.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 홈페이지 '고시공고' 참조 및 광진구청 건축과 (☎02-450-7726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■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[별지 제11호서식] <개정 2014.7.28>

의 견 제 출 서

※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.

의견제출인	성명	
	주소	전화번호

의견제출 내용	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	
	당사자	성명(명칭)
		주소 (전화번호:)
	의 견	
	기 타	

「행정절차법」 제27조제1항(제31조제3항)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.

년 월 일

의견제출인 (서명 또는 인)

귀하

유 의 사 항

1.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.
2.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.
3.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10㎜×297㎜[백상지 80g/㎡(재활용품)]